

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

의안번호	135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12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수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 유치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보조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」를 신설함(안 제4조)
- 나. 타 시 · 도에서 우리군으로 이전하여 오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(안 제9조 내지 17조)
- 다.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 요청 명문화(안 제18조)
- 라. 투자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지급 규정 (안 제 1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별첨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서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 예고 : 평창군공고 2004-451호(2004.11.10)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기업과 민간투자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“이전기업”이라 함은 타시 · 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평창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2.“공장”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
- 3.“상시고용인원”이라 함은 당해기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.
- 4.“중·대규모투자기업”이라 함은 국내외투자기업중 공장시설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.
- 5.“연구소”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.

제3조(기업유치 의무) 군수는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등

제4조(투자유치위원회)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평창군투자유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, 기본계획 및 관련정책에 대한 자문
2. 기업,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등 활동전개
3. 투자유치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사항 심의
4.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
5. 기업 및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심의
6. 기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

제5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평창군의회의원
2. 투자유치관련 기관 · 단체의 임원
3. 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자
4.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자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 · 과장이 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일시, 장소,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,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결과 조치)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평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투자기업의 지원 등

제9조(지방세감면) 군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평창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(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) 군수는 토지 등 공유재산을 이전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,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1조(이전보조금 지원) ① 군수는 강원도외에 소재하는 이전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평창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설보조금 지원) ① 군수는 강원도외에 소재하는 이전기업이 평창군에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(토지매입비용 제외)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기반조성비를 포함하여 공장건축, 기계장치 등 3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부지매입비 지원) ① 군수는 강원도외에 소재하는 이전기업이 개별 입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용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.

제14조(고용촉진보조금 지원)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에 공장을 설립한 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 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50 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원총액은 당해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5조(교육훈련보조금 지원)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관내에 공장을 설립한 후 고용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상시 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초과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총액은 당해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6조(투자기업의 지원) 군수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, 상·하수도, 교량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과 공장 설립시 창구일원화를 통해 행정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제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7조(중 ·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 ①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 · 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지 매입비를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, 개별 및 계획입지 부지매입의 지원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.

1. 본사 · 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투자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%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2. 본사·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이거나 투자 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%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3. 본사 · 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이거나 투자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%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장 보조

제18조(민간기관의 파견근무)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 · 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(포상 및 성과금 지급) ①군수는 투자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원대상 투자규모 및 성과금의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하며, 그 비용은 전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0조(투자기업의 사후관리)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에 따른 투자기업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, 당초 제출한 투자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등이 사업시행 후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1조(지원의 취소 및 환수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 등이 부과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② 투자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때
2. 공장가동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 폐업을 한때
3.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원을 감축한 때
4. 지원을 받아 용지를 매입한 후 그 용지를 10년이내에 매각한 때
5. 보조금지원에 따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은 지방세징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.

제22조(다른 조례 등의 준용)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 발 췌 서

<국가균형발전특별법>

제17조(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

1. 지역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
4. 지역의 투자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9조(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·군·구별 인구과밀·산업입지·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·행정적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<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>

제16조(기업의 지방이전)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,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<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공장"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,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·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(이하 "제조시설등"이라 한다)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<소득세법시행령>

제185조(원천징수세액의 납부)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 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·한국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,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<기술개발촉진법>

제7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등)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(이하“특정연구개발사업”이라한다)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.

2.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(이하“기업연구소”라 한다)